

(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참조26)

성남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경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8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6월 일

발 의 자: 박경희, 강상태, 고병용, 조정식, 김윤환, 윤혜선, 이군수, 박기범, 성해련, 최종성, 조우현, 서은경, 정용한, 김보미, 추선미, 안극수, 서희경 (이상 17명)

개정 구분 : 일부개정

개정 이유

-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조사업무 명시
- 조례 성격과 맞지 않는 협의체 재정의 및 협의·자문 사항 수정
- 비용 절감 및 추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주기 개선
-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동일한 기관명 재정의

주요 내용

- 가.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
- 나.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다. 아동보호 민간협의체를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명칭 변경(안 제9조)
- 라. 아동학대실태조사 2년에서 4년으로 변경(안 제11조)

개정조례안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 없음

성남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남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“아동학대예방센터”란 법 제45조에 따른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으로서 학대받은”을 “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”으로, “예방을”을 “예방 교육·홍보 등 법 제46조의 업무를”로 한다.

제8조(아동보호 민간협의체 설치)를 삭제하고, **제7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)**를 제8조로 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)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
3.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
4.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아동학대 예방 교육)부터 **제18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
2.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법률, 의료,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
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.

제11조(실태조사) 제1항 중 “2년”을 “4년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“(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”을 “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 등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“아동학대예방센터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동학대예방센터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동학대예방센터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으로,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아동학대예방센터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) 제2항 중 “아동학대예방센터와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과”으로 한다.

제18조(지도·감독) 중 “아동학대예방센터와”를 “아동보호전문기관과”로, “시립 아동복지시설”을 “아동복지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”란 <u>법 제45조에 따른 ‘아동보호전문기관’</u>으로서 학대 받은 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<u>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<u>예방 교육·홍보 등 법 제46조의 업무를 -----.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(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)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</u></p> <p><u>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</u></p> <p><u>3.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<p><u>제7조 (생략)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8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</u></p> <p><u>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1.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아동보호 민간협의체 설치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보호 민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아동학대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. 법률, 의료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3.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 간 성 행동 문제 개입 및 처리방안 논의 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제9조 (생략)</p> <p>제10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. 법률, 의료,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<삭 제></p> <p>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</p> <p>제11조(실태조사) ① ----- 4년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제11조(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</u></p> <p>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, 보호 및 치료를 위해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<u>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시장은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를 설치할 경우 시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2조 ~ 제14조 (생략)</u>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2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 등)</u>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⑤ ----- <u>아동보호전문기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3조 ~ 제15조 (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)</u></p>
<p><u>제15조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)</u></p> <p>① (생략)</p>	<p><u>제16조(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)</u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은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와 협조하여 신문,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6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7조</u>(지도·감독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<u>아동학대예방센터</u>와 제12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<u>시립아동복지시설</u>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8조</u> (생략)</p>	<p>② ----- <u>아동보호전문기관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7조</u>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 <p><u>제18조</u>(지도·감독) ----- ----- ----- <u>아동보호전문기관과</u> ----- ----- <u>아동복지시설</u>----- -----.</p> <p><u>제19조</u> (현행 제18조와 같음)</p>